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85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 허종식 · 이성만 · 김성주

정일영 · 송영길 · 김교흥

유동수 • 박찬대 • 정운천

신현영 · 한정애 · 서영석

홍영표 · 인재근 · 배준영

신동근 • 박용진 • 최혜영

윤상현 · 맹성규 의원

(2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 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자체는 복지부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,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"을 "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 보 확인 등) ① 보건복지부장 보 확인 등) ①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 관,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 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 도지사는-----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| 제18 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의료기관 및 약국, 법인 · 단체 •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생 략)